



광 양 시

시 보는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장
람	



제6호 2022. 2. 16.(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2-56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2-60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2-61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2-62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5
광양시 고시 제2022-63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분할 고시	7
광양시 고시 제2022-65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298호 통행의 금지·제한	18
광양시 공고 제2022-324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 밭작물 재배지 조성
3.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

구분	토 지 소 재 지					승인 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일)	사 업 시 행 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당초	광양	봉강	부저	산95-6	임야	4,706	73,000	2020.11.4.~ 2021.11.3.	광양시 금호로 244, 3*동 10*호(목련빌라)	김*용
변경	광양	봉강	부저	산95-6	임야	4,706	73,000	2020.11.4.~ 2022.5.31.	광양시 금호로 244, 3*동 10*호(목련빌라)	김*용

광양시 고시 제2022-60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2. 2. 16.(수)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명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명 변경 조서_매천3길

연번	구분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변경사유	부여방식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기존	매천1길 (1차중속)	길	봉강면	봉강면 석사리 25-1	봉강면 석사리 24-1	도면 참조	159	4	20	35-1	35-16	신청에 의한 변경	매천 황현 사당 및 생가가 있는 곳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변경	매천3길 (주도로)	길	봉강면	봉강면 석사리 25-1	봉강면 석사리 17-19		696	4	20	1	70		

현황도면



광양시 고시 제2022-61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변경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1	매천1길 35-16	매천3길 16	2022. 2. 16.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16.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2길 19(중동) 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 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2.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계	건물번호 부여 7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744-3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2길 19 (중동)	20220216	20090421	옛 동광양시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819외 52필지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273 (마동)	20220216	20220126	중마동 중앙에 위치한 도로에서 인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22	전라남도 광양시 초원길 42 (금호동)	20220216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25-9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대흥1길 140-11	20220216	20081001	대방과 흥룡마을에서 작명,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11-7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654	20220216	20090703	섬진강 변과 매화 재배 지에서 명명	
6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61-4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대청길 50	20220216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091-5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방동길 27-1	20220216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분할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분할 고시 합니다.

〈분할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소		건물번호 분할일	건물번호 분할 사유
	분 할 전	분 할 후		
1	섬진강매화로 1073	섬진강매화로 1073	2022. 2. 16.	건물군 분할
		섬진강매화로 1073-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16.

광 양 시 장

광양시 고시 제 2022-65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성1길 26	2022. 2. 16.	건물철거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전남	광양시	광양읍	호암대실길 241-21		
3	전남	광양시	광양읍	봉정길 25		
4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공단3길 8		
5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19-15		
6	전남	광양시	다압면	지막1길 258		
7	전남	광양시	다압면	소학정길 10-8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16.

광 양 시 장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읍성1길	26	광양읍 읍내리 314-1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16.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호암대실길	241-21	광양읍 죽림리 237-2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16.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봉정길	25	광양읍 세풍리 49-1	▶ 건물철거 (건축과-2107(2022. 1. 14.)호에 의거)	2022. 1. 14.	2022. 2. 16.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초남공단3길	8	광양읍 초남리 740-2	▶ 건물철거 (건축과-1518(2022. 1. 12.)호에 의거)	2022. 1. 12.	2022. 2. 16.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음성길	119-15	광양읍 인서리 32	▶ 건물철거 (건축과-51095(2021. 12. 23.)호에 의거)	2021. 12. 23.	2022. 2. 16.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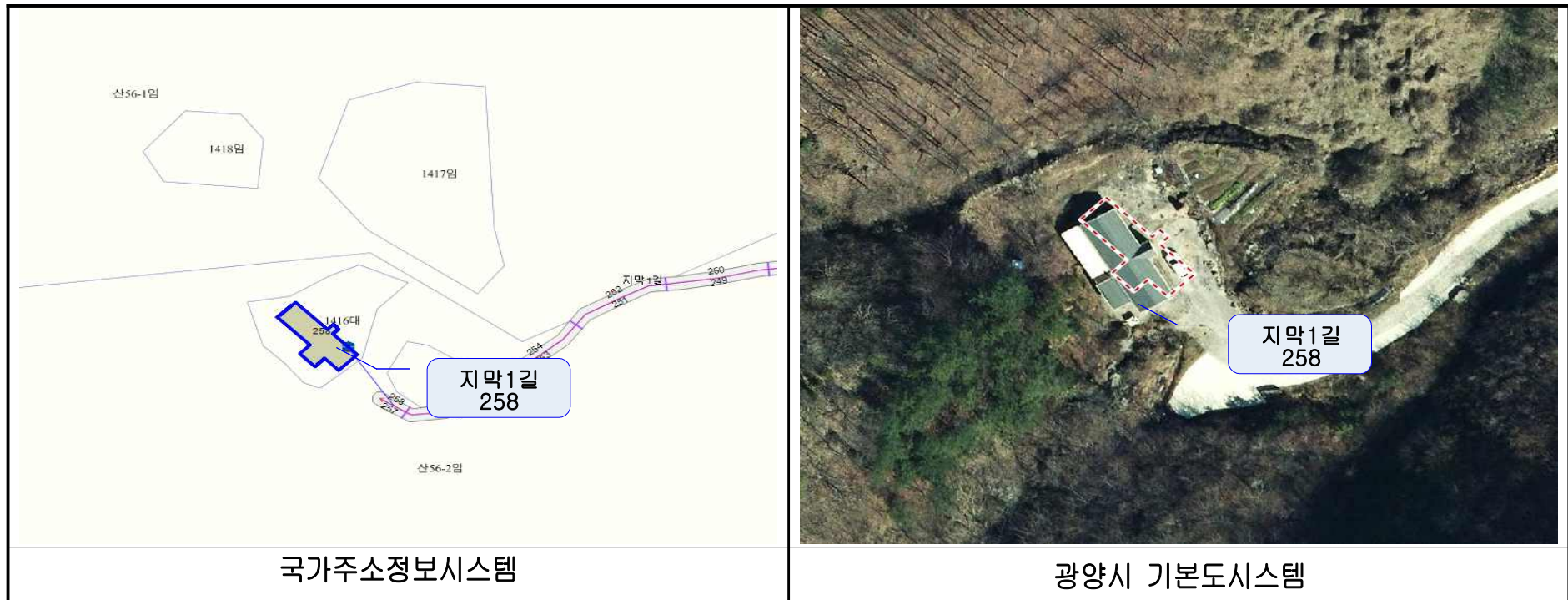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지막1길	258	다압면 도사리 1416	▶ 건물철거 (건축과-5083(2022. 2. 8.)호에 의거)	2022. 2. 8.	2022. 2. 16.

 현황도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소학정길	10-8	다압면 도사리 1265-1	▶ 건물철거 (건축물대장 없음)	2022. 2. 7. (확인일)	2022. 2. 16.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2-236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성명)	광양지사장	주소	전남 나주시 전력로55
소하천명		신오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25-10외 8개소		
	면적	2.35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2. 7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콘크리트전주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2-24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광양시장(건설과)	주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소하천명		고길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황금동 1074-6		
	면적	8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2. 8 ~ 영구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수로암거)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광양시 공고 제2022-298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광 양 시 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도시계획도로 대로 2-19호선 (지동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보행자, 전체차량 (전면통제)	구간	백운로 ~ 지동길 (영재교육원~성황우체국)
기간	2022년 2월 21일 ~ 2022년 3월 26일(통행의 금지·제한)		

이유

-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토목공사) 도로종단선형개선사업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노선 안내
 - 당 초 : 백운로(고향주유소) ⇔ 지동길(영재교육원~성황우체국) ⇔ 성황·도이지구
 - 변 경 : 백운로(고향주유소) ⇔ کن부두사거리 ⇔ 중마로(진아리채2차APT~금광아파트)
⇔ 지동터널 ⇔ 지동길(성황근린공원~성황우체국) ⇔ 성황·도이지구
- 통행로 확보 안내
 - 영재교육원 및 성황초등학교 임시 통행로 확보 예정.
- 기타사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과 택지개발팀(061-797-2848)으로 문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우회노선도

위치도 및 우회노선도

통행의 금지·제한구간 위치도



우회노선도



◆ 공고 제2022 - 324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광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개정)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30일

나. 선거에 종사한 공무원 1일의 특별휴가 부여(신설)

3. 개정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기간: 2022. 2. 16. ~ 2022. 3. 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총무과(전화: 061-797-2722, FAX: 061-797-2579, E-mail: combij@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2항에 따라”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을 “제7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휴가) ① ~ ④(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 ~ ④(현행 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 <u>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설치령</u> 」 제11조제2항에 <u>따라</u>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 여 영 <u>제7조제1항에 따른</u>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 다.	⑤ ----- ----- 「 <u>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u> 」에 따른----- ----- <u>제7조제1항의</u>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 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 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 만 : <u>15일</u>	2. ----- ---- <u>20일</u>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15일</u>	3. ----- <u>30일</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략)

<신설>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